「(재)구미시장학재단 출연안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**: 2026년 10월 6일
2. **제 출 자**: 구미시장
3. **회부일자**: 2026년 10월 7일
4. **상정일자**: 2026년 10월 14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**제안 설명자: 미래교육돌봄국장 정 창 호**

2. **제안이유**

가.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학·교육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구미시장학재단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지원 필요

나. (재)구미시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, 장학·학숙 사업비 등 출연금을 2027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(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시장학재단

(2) 출연금액 : 720백만원

(3) 출연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-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

나. 사업 개요

(1) 사 업 명 : 구미시장학재단 운영

(2) 사업기간 : 2027년 1월 ~ 12월

(3) 사업내용

- 장학사업 (지역정주형 인재육성, 신규 장학제도 운영)
- 구미학숙 운영 (시설관리, 입사생 역량강화 지원)
- 교육정책 연구 및 개발 (교육복지 사업, 교육정책 제언 등)

다. 출연의 필요성

(1) 구미시 장학·교육지원 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 육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구미시장학재단의 사무국 운영 기반 마련 및 안정적 운영 지원

(2) 구미시의 교육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, 사업비 등 재원 지원 필요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(2)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
(3)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2027년도 예산편성

다. 합　　의 : 예산재정과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출연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(재)구미시장학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202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장학사업과 구미학숙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, 재단 개편에 따른 교육정책 연구·개발 등 확대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.

- 다만, 본 출연안은 같은 회기에 제출된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른 재단 개편을 전제로 작성된 만큼, 조례안의 의결 결과와 연계하여 출연 목적과 지원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. 또한 조례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출연계획도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- 아울러, 2027년 4월 출범 계획과 실제 인력 채용 시기에 맞춰 인건비, 운영비의 산정기간 및 집행계획을 구체화하고, 향후 확대 예정인 교육정책 연구와 진학진로 지원센터 운영 등 업무 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해 보임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Ⅴ. 토 론 요 지: 없 음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Ⅶ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